

의안번호	2201041
의 퇴 인	박정의원
회 답 일	2024. 08. 07.
추계번호	24A1418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1억 2,000만원, 2029년 4억 9,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0억 6,500만원(연평균 8억 1,3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국가지자체의 화재알림설비 설치 (안 제11조의2제2항)	2,120	477	487	485	495	4,065	813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2제2항 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	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애인¹⁾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여야 함(제2항후단)	의무규정

1)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장애와 장애인)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·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.

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1조의2제2항 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알림설비 설치비용을 추계
 -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알림설비를 화재경보기 및 LED비상조명 등으로 구성되는 ‘비상라이트’로 가정하면서 추계기간 동안 1회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²⁾를 적용함
- 개정안 부칙 제1조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 -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설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추계기간 첫해인 2025년에 화재알림설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함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 7.)

(단위: %)						
연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비자물가상승률	2.6	2.2	2.2	2.1	2.1	2.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화재알림설비 설치비용”으로 하며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함에 따른 비용으로 함
 -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실적 및 계획을 바탕으로 추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규모에 충전시설당 화재알림설비 설치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
 - 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한 총량 추정치에 운영주체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에 근거한 운영주체별 비중을 곱하여 추산함
 - 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은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며, 관계부처 합동(2023. 6. 29.)에 제시된 계획 규모를 바탕으로 2024년, 2026년, 2028~2029년은 선형보간법을 활용하여 추정
 - － 관계부처 합동 ‘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’(2023. 6. 29.)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5년 59만기, 2027년 85만기, 2030년 123만기가 보급될 계획임

[표 3]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정: 2023~2030년

(단위: 만기)

구 분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	실적	추정	계획	추정	계획	추정	추정	계획
전기자동차 충전시설	31	45	59	72	85	98	110	123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와 관계부처 합동(2023. 6. 29.)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비율은 환경부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2024년 6월 누적 기준인 2.6%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운영주체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: 2024년 6월말 기준

(단위: 기, %)

운영주체	규모	비중
국가(환경부)	8,504	2.3
지방자치단체	1,052	0.3
한국전력	10,922	3.0
민간 등 기타	347,578	94.4
합 계	368,056	100.0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	9,556	2.6

주: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 등록 기준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5]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정: 2025~2029년

(단위: 천기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	15.3	18.7	22.1	25.4	28.6
- 증분	15.3 ¹⁾	3.4	3.4	3.3	3.3

주: 1) 2025년의 추정치는 2025년까지의 충전시설 누적 규모

1. 단수 조정된 수치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기당 화재알림설비 설치 단가 132,000원에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
 -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검색 결과, 2023년 기준 화재알림설비 단가는 132,000원³⁾으로 추정됨

[표 6] 화재알림설비 단가 추정: 2025~2029년

(단위: 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
화재알림설비 설치 단가	13.8	14.1	14.4	14.7	15.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인천광역시 연수구 입찰공고(입찰공고번호: 20230901507-00, '2023년 안전취약계층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구매')에 따르면 화재알림설비(비상라이트: 화재경보기/LED비상조명등) 4,510개 구입에 595,320,000원이 입찰금액임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40억 6,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7] 국가·지자체의 전기자동차 화재알림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국가지자체의 화재알림설비 설치 (안 제11조의2제2항)	2,120	477	487	485	495	4,065	813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‘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’(2023. 6. 29.)의 충전시설 확충 계획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신헌태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헌태	02-6788-4653	heontshin@assembly.go.kr